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제4차 NAP 수립에 대한 의견서

2023. 11. 16.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경남퀴어문화축제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대구퀴어문화축제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레주파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미래당 성평등위원회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30대 이상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서울인권영화제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사)신나는센터언니네트워케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인제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IQ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당 인권위원회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땡동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튜립연대(준)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퀴어동네)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트랜스해방전선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청소년년감염인커뮤니티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총 44개 단체 및 모임)

목차

1.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통계파악 및 실태조사 진행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3. 동성 커플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4. 성별정정에 있어 생식능력제거 등 강제적 요건 폐지
5. 교도소 내 성소수자 수용자의 인권보호정책, 지침 마련
6.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인권보호정책
7. 균형법 제92조의6(추행) 폐지
8. 군 내 성소수자 인권보장 방안 마련
9.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10. 청소년 쉼터 이용 실태 파악 및 차별 예방
11. 성소수자 고용 차별 예방 및 시정
12. 성희롱 관련 대책에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포함
13. 성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종합대책 마련
14. HIV/AIDS 감염인의 의료차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추진
15.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보장
16.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마련 및 개선
17. 성소수자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18. 형사 기관 및 절차에서 성소수자 인권 개선
19.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체계 도입 및 신분서류에서 불필요한 성별정보 삭제
20. 성소수자 배제·차별적 교육 내용 및 환경 개선
21. 대학의 성소수자 차별적 교육이념 및 정책 규제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통계파악 및 실태조사 진행

소관부처: 국무총리 및 제 정부부처

○ 현황

-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조사는 전혀 시행된 바 없음. 이에 따라 성소수자 인구의 규모와 분포, 생활실태 등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음¹⁾
- 202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3월 31일)을 앞두고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관련 조사 항목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무총리 및 각 정부부처에 권고함.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모두 불수용을 함
- 인구집단에 대한 정확한 통계마련은 모든 국가 정책의 기본임. 성소수자의 인구규모 및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련한 정책 추진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음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2022. 7. 11.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중앙행정기관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국가승인통계조사와 각 기관의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 등에 반영

○ 정책대안

-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동성커플/부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
- 중앙행정기관 및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에 참여자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
- 중앙행정기관 및 각 기관에서 성소수자 대상의 실태조사를 수행

1) 이호림, 이혜민, 주승섭, 김란영, 엄윤정, 김승섭. "국가 대표성 있는 설문 조사에서의 성소수자 정체성 측정 필요성: 국내외 현황 검토와 측정 문항 제안" 비판사회정책 no.74(2022) : 175-208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소관부처: 법무부

○ 현황

- 현재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안(권인숙, 박주민, 이상민 의원 각 대표발의)가 발의되어 있고, 10만명의 동의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회부되어 있음.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 근거

- 2023. 11. 3.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정부보고서 최종권해 12.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 (a) 모든 삶의 영역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직접적, 간접적, 교차적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며 차별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한다;
 - (b) 인권 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증진하고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고정관념적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

○ 정책대안

-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정확한 시행 효과, 각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

동성 커플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소관부처: 법무부 등

○ 현황

- 2023. 4. 26. 생활동반자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됨. 2023. 5. 31.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민법 개정안과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이른바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됨
- 2022. 4. 1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함
- 2022. 2. 21. 서울고등법원은 동성결합 상대방의 「국민건강보험법」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함(2022누32797)

○ 근거

- 2023. 11. 3.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14. (c) 민법 개정 또는 시민 결합 도입 등 동성 커플과 그 자녀가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도입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 정책대안

- 현재 국회에 발의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민법 개정안과 생활동반자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
- 동성커플/부부가 겪는 차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각 제도, 정책에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시행

성별정정에 있어 생식능력제거 등 강제적 요건 폐지

소관부처: 법무부 등

○ 현황

- 현재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은 법률이 없이 대법원 판례와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의해 이루어짐. 또한 해당 판례와 예규에 따른 기준은 ‘생식능력제거, 외부성기형성수술, 혼인 중이 아닐 것’ 등 강제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 2022. 11. 24.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는 기본권이라는 전제 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성별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판결함(2020스616)
- 2023. 2. 23.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예규 중 수술요건은 신체 온전성의 자유,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장에게 국제인권규범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 예규 제6조 제3호 및 제4호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개정할 것과 국회의장에게 관련 특별법을 만들 것을 권고함
- 현재 지방법원에서는 성별정정에 있어 외과적 수술 요구를 위헌으로 보아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례가 있으나 아직은 일부에 불과함

○ 근거

- 2023. 11. 3.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14. (d) '성전환증' 진단, 생식능력제거 및 외부성기 성형수술, 혼인 여부와 관련된 조건 등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성전환에 대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 정책대안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성별변경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 제시

교도소 내 성소수자 수용자의 인권보호정책, 지침 마련

소관부처: 법무부

○ 현황

- 법무부는 2019년 7월에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 및 관리 방안을 작성하고 2020년 4월 이를 수정함
- 해당 방안은 이전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정의나 처우 면에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에는 미치지 못함
- 이러한 법무부 지침이 법률이 아니기에 구속력이 없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임. 무지개행동은 오랜 기간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결과 해당 지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제5조(차별 금지), 옥야카르타 원칙 제9원칙(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 정책대안

- 형집행법 및 시행령에 성소수자 수용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조항 신설 추진(참고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
- 성소수자 수용자의 내부 지침 내용을 공개하고 개정 시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2)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7608636&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EA%B5%90%EC%A0%95%EC%8B%9C%EC%84%A4&menuLevel=3&menuNo=115>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인권보호정책

소관부처: 법무부

○ 현황

- 성소수자 난민의 난민심사과정에서 성소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성관계, 체위묘사 등 부적절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큰 질문을 한 사례들이 있음.
- 난민심사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진술과 다르게 통역하거나, 어휘와 뉘앙스를 틀리게 통역하는 경우 종종 발생함.
- 성소수자 난민은 그 특수성상 출신국 커뮤니티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음.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난민신청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근거

- 유엔난민기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관한 난민 신청 가이드라인’

○ 정책대안

- 난민심사관에 대한 교육 필요: 성소수자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성소수자 난민의 특수성, 정서적 외상, 낙인, 내재화된 동성애혐오, 본국 정부에 대한 공포 혹은 불신, 수치심, 문화적 영향, 나이, 교육 수준, 개인의 자각 수준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통역 관련 가이드라인과 교육 필요: 난민심사 과정에서 비밀유지가 보장되고, 통역인의 경우 신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성소수자 관련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인으로 지정되어야 함. 통역이 적절했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녹음이 필요함
-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난민신청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거, 의료 지원 체계 마련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폐지

소관부처: 국방부

○ 현황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합의된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으로 국내에서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의 상징이 되어옴
- 2023. 10. 26.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림. 그러나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종래의 평가를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 현 시점에서, 이 사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동성 군인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정부는 유념해야 함.

○ 근거

- 2023. 11. 3.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b)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

○ 정책대안

-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추진
-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변화 개선을 위한 국방부 내 인권 및 법담당 부서와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거버넌스 구축

군 내 성소수자 인권보장 방안 마련

소관부처: 국방부

○ 현황

- 故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에서 트랜스젠더를 포함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제기됨
- 이에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2023. 2. 15.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함
-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서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고 판결했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임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2022. 7. 11.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트랜스젠더 병리화 요건 삭제
 - 트랜스젠더가 군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령에 규정 마련
 - 제복, 화장실, 목욕시설, 숙소 등에 있어 성소수자 친화적 공간으로서 군대 시설 개편 및 다양성 문화 확립

○ 정책대안

- 국방부 연구용역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 결과 공개
- 국가인권위 권고를 반영하여 군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 방안 마련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현황

-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여성이 동성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청소년 성소수자가 가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지원 받는 데 어려움이 있고 성폭력피해자 쉼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운영되는 쉼터에서 여성 성소수자가 입소를 거부당하거나 1366에서 적절한 도움을 얻지 못하는 사례 발생함.
-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2014)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여성, 트랜스젠더 여성, 트랜스젠더 남성의 다수가 혈연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성소수자 폭력·학대가 ‘자주 또는 종종 일어난다’고 응답했고 (레즈비언 71.4%, 바이섹슈얼 여성 67.6%, 트랜스젠더 여성 71.7%, 트랜스젠더 남성 66.9%).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 역시 ‘자주 또는 종종 일어난다’고 응답함 (레즈비언 64.3%, 트랜스젠더 여성 59.7%, 트랜스젠더 남성 68.5%). 이 같은 폭력피해에 개입하기 위한 현행 성폭력·가정폭력 지원체계의 전문성이 요구됨.
- 성소수자가 겪는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 혈연가족이나 친족에 의한 폭력과 학대, 정신병원 강제입원, 교정 강간,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책 대안

-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기관 상담자 대상 성소수자 인권교육 시행 및 역량 강화

청소년 쉼터 이용 실태 파악 및 차별 예방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 현황

- 탈가정 위기의 청소년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은 청소년 쉼터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성소수자 정체성을 숨긴 채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요받거나, 성소수자 혐오발언에 노출되거나, 생활에서 부당하게 제재와 간섭을 받게 되기도 하고,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밝혀지면 아예 입소나 시설의 이용이 거부되기도 함.
- 2021년 6월 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 센터 명동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가정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47.4%는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을 수 없거나 입소가 불가능해서’ 쉼터에 가지 못했다고 답함.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2022. 7. 11.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 위기상황 성소수자에 대한 쉼터 이용 지원 방안 마련

○ 정책 대안

- 청소년 성소수자의 청소년 쉼터 이용경험 및 차별 실태조사
- 청소년 쉼터에서의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예방 방안 마련

성소수자 고용 차별 예방 및 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현황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 영역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과 관련하여 △채용의 거부 및 입사취소(2.1%), △채용 과정에서 외모·복장·행동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경험(27.8%), △채용 과정에서 비혼을 이유로 한 차별 경험(10.7%), △직장 내 차별 경험(11.0%), △해고·권고사직(14.1%), △암묵적 사직 종용(1.8%) 등 고용의 전 단계에서 다양한 차별이 보고되고 있음.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관련하여서도 △채용 과정에서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음(85.9%), △채용 과정에서 외모·복장·행동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53.5%), △정체성을 이유로 채용이 거부됨(15.5%), △직장 내 차별 경험(16.0%), △해고·권고사직(16.5%), △암묵적 사직 종용(8.9%) 등 고용의 전 단계에서 심한 차별을 겪고 있음이 드러남.
-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성 성소수자는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 모집·채용 시 용모 차별을 겪는 대표적인 여성 집단의 하나임에도 이러한 차별 실태에 대한 파악과 대책 수립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근거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

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책대안

- 고용 영역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으로 인한 차별 실태를 조사할 것.
- 모집·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고용의 전 단계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이 금지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
- 고용노동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이러한 차별이 금지된다는 점을 안내할 것.
- 여성가족부는 여성 성소수자 집단을 고용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 집단의 하나로 인지하고, 그에 특유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양성평등 정책에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을 포함할 것.

성희롱 관련 대책에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포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현황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양성애자 근로자의 11.4%, 트랜스젠더 근로자의 26%가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일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성희롱은 동성(同性) 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스럽지 않다, 남자답지 못하다, 성소수자처럼 보인다 등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을 이유 삼아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들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함.
- 일본의 경우 「남녀고용기회균등법(男女雇用機会均等法)」에 따른 ‘성희롱 지침(후생노동성)’은 ‘직장 내 성희롱에는 동성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것’ 이고 ‘피해를 받은 자의 성적 지향 또는 성자인(性自認)에 관계없이 해당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성희롱도 본 지침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³⁾ 일본 「성희롱에 관한 인사원규칙」 또한 ‘성적지향이나 성자인(性自認)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포함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음.⁴⁾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3) 「事業主が職場における性的な言動に起因する問題に関して雇用管理上講ずべき措置についての指針」 2조 (1) 참조

4) 人事院規則10-10 (セクシュアル・ハラスメントの防止等) の運用について (平成10年11月13日職福-442) (人事院事務総長発)

○ 정책대안

-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이드라인에 동성 간 성희롱,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성희롱 실태조사 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과 관련한 성희롱 실태가 집계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할 것.
-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것
-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 3년마다 실시하는 성희롱 실태조사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

성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종합대책 마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현황

-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 중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하여 “’ 18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양태 중에는 인적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괴롭힘이 존재하는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괴롭힘(성소수자처럼 보인다, 여성스럽지 않다, 남자답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행되는 괴롭힘)은 이러한 차별적 괴롭힘의 대표적인 예임.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본인의 정체성으로 인한 따돌림, 협박, 반복적 지적, 비난, 조롱, 물품훼손, 신체적 폭력, 성희롱, 성폭력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응답자의 41.7%,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62.0%에 달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적 괴롭힘은 실제로는 성소수자가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제 괴롭힘 실태는 더욱 광범위할 수 있다.

○ 정책대안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준비 중인 “직장 내 괴롭힘 종합대책”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킬 것
-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내용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구제책 마련 시 성소수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반영할 것(고충처리담당자의 성소수자 인권 교육 이수 의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정보의 노출 방지 등)

HIV/AIDS 감염인의 의료차별 등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추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현황

- HIV감염인과 AIDS 환자(이하 ‘HIV/AIDS감염인’)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 들임.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도 수술을 거부당하는 등 일상에서의 HIV/AIDS를 이유로 한 차별은 심각한 상황임
- 최근인 2023. 6. 14.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병원에 대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22진정0567700)
- 2020. 6. 3.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함
- 한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는 HIV/AIDS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범으로, HIV/AIDS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찍고 오히려 예방과 치료를 어렵게 하는 악법임. 2023. 10. 26.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의견이 나왔으나 다수인 5인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냈고, 합헌의견에서도 바이러스 미검출은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U=U를 인정함(2019헌가 30)

○ 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의사 국가고시 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검증 강화 △에이즈 예방법 의료차별금지 규정 등 법령 보완,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 개발 △국공립 병원 의료인 대상의 교육 및 캠페인, △감염인 요양 서비스 대책 마련 및 간병비 지원 현실화. △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모두 수용 의견을 밝힘

○ 정책대안

- HIV/AIDS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HIV 감염인 의료차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 U=U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HIV/AIDS 감염인의 인권 보장과 편견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캠페인 실시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조항을 폐지할 것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보장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현황

- 현재 트랜스젠더의 정신과 진단,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과 같은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들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체계상 임의비급여로 되어 있어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 2017년 트랜스젠더 2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성기성형 수술에 대해 트랜스여성은 평균 약 1,514만원, 트랜스남성은 평균 약 2,05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응답자들의 과반수가 정신과 진단,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를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 응답함⁵⁾
-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가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며 치료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의학계에서는 공인된 견해임.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개국 이상이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공적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4월부터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에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권고를 내렸고, 2016년에 재권고를 함
- 2017. 10. 유엔 사회권위원회 정부심의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급여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답함”.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가 급여 또는 예비급여 전환을 검토 중인 3,825개의 비급여 항목에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는 없음

○ 근거

- 2018. 3.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 최종견해
- “건강보험 보장을 포함한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것”

5) Hyemin Lee et al.(2017) *Barriers to Transition-related Healthcare among Korean Transgender Adults: Focused on Gender Identity Disorder Diagnosis, Hormone Therapy, and Sex Reassignment Surgery*. *Epidemiology and Health* 2018

○ 정책대안

-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트랜스젠더의 정신과 진단, 호르몬요법, 성전환 수술 등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를 포함시킬 것
- 성전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것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마련 및 개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현황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⁶⁾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동성애자/양성애자 중 14.2%가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함. 여기에는 의료인의 고정관념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적절한 질문이나 모욕을 들은 경우 등이 있음. 특히 의료인 등이 정체성을 알고 있거나 의심하는 경우는 55%가 이러한 차별을 경험함
- 같은 조사에서 트랜스젠더의 35.9%가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는 법적 성별과 외관이 불일치하여 본인임을 의심받거나 조롱, 모욕을 당한 경우,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입원실의 배정, 성전환 관련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한 경우 등이 있음
- 이러한 의료기관에서의 차별은 성소수자의 건강수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2016년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자 남성/여성, 양성애자 남성/여성 모두 요통, 상지통, 하지통 등 근골격계 통증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동성애자/양성애자 남성의 약 30%, 여성의 약 50%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⁷⁾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환자조사’ 등을 통해 성별, 지역, 연령, 상병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보건의료 이용 실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차별은 의료인 등의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됨에도 의학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과정은 없으며 의료인 등에 대한 성소수자 관련 가이드라인 역시 존재하지 않음

6) 국가인권위원회(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7) 이호림 외(2016). 한국 동성애자·양성애자의 건강불평등: 레인보우 커넥션 프로젝트. epiH Vol. 39

○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정책대안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나 연도별 ‘환자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근로환경조사’ 등과 같은 전반적 보건의료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에 있어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고려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
- 성소수자에 대한 기초적 이해, 성소수자 차별금지 원칙, 성소수자의 건강 특성 등을 담은 의료인을 위한 성소수자 보건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배포할 것
- 의료인 양성 과정 및 보수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성소수자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현황

- 성소수자의 자살위험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성인 동성애자/양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34.6%로 성인 일반인구(3.9%)에 비해 8.9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⁸⁾ 트랜스젠더의 경우 지난 1년간 53.9%가 자살생각을 하였으며 실제로 자살시도를 한 경우도 15.1%라는 높은 수치를 보임⁹⁾
- 국가인권위 2021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337명(57.1%)은 우울증, 143명(24.4%)은 공황장애를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함.
- 성소수자들이 자살위험도는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 폭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2014년의 조사¹⁰⁾에 따르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자살시도와 자해시도의 비율은 각각 40.9%와 48.1%로, 차별이나 폭력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각각 20.7%, 26.9%)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4년 국가인권위 조사¹¹⁾에서도 차별 및 괴롭힘을 경험한 청소년의 19.4%가 자살시도를, 16.1%가 자해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2022. 7. 11.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자살·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항목을 추가하여 성소수자를 정부 정신보건 정책 내에서

8) Yi, H., Lee, H., Park, J., Choi, B., & Kim, S. S. (2017). Health disparities between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and the gene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Rainbow Connection Project I. *Epidemiology and health*, 39.

9) Lee, H., Operario, D., van den Berg, J. J., Yi, H., Choo, S., & Kim, S. S. (2020). Health disparities among transgender adults in South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32(2-3), 103-110.

10) 나영정 외(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1) 국가인권위원회(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가시화

- 성소수자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연구 활성화 및 이에 따른 자살 예방 정책 수립

○ 정책대안

- 자살 관련 정보 및 통계 수집에 있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따른 자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기본계획’ 및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대책을 포함시킬 것
- 성소수자 자살률의 근본 원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의 성소수자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것

형사 기관 및 절차에서 성소수자 인권 개선

소관청: 경찰청

○ 현황

- 성소수자는 수사기관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와 편견으로 인하여 다양한 차별을 경험함. 국가인권위원회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이 형사절차를 이용함에 있어, 1) 성별 표현이나 정체성에 대한 모욕적 시선과 발언 2) 범죄피해 사실을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 받음 3) 트랜스젠더의 경우 신분 확인의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은 2023년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훈령으로 발령함. 그러나 해당 규칙은 처음 시행령으로 제정 추진 당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을 인권단체에서 지적하였으나, 최종안에서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 정책대안

-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성소수자 수사 시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 조항 마련
-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공개
-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성소수자 인권교육 실시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체계 도입 및 신분서류에서 불필요한 성별정보 삭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현황

- 주민등록번호는 오랜 기간 동안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등을 표시하는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7번째 자리가 주민등록상 성별을 표시함.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실시되고, 2020년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성별번호는 그대로 남아 있음
- 주민등록번호상 성별표시는 사회적 성별과 법적 성별이 불일치하는 트랜스젠더가 차별과 배제를 받게 만듦.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별이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트랜스젠더는 병원 이용(21.5%), 담배 구입이나 술집 등 방문(16.4%), 보험 가입 및 상담 (15.0%), 은행 이용 및 상담(14.3%), 투표 참여(10.5%), 전화·인터넷 가입(9.2%), 증명서 발급(8.5%), 주택 관련 계약(8.1%), 여권 발급(6.9%)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남성/여성 두 가지로만 구성된 성별표시 체계로 인하여 스스로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인식하는 젠더퀴어, 인터섹스는 자신을 드러내주지 못하는 신분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함

○ 정책대안

-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단계적 도입계획을 수립할 것
- 성별표기로 인하여 트랜스젠더, 인터섹스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현재 신분서류에서 불필요하게 성별을 표기한 경우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시할 것

성소수자 배제 · 차별적 교육 내용 및 환경 개선

소관부처: 교육부

○ 현황

- 교육부는 2015년 국가수준의성교육표준안(이하 성교육표준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폐지 요구에 대하여도 “성차별적이지 않고 문제없다. 성소수자 내용은 사회적 합의 대상이다” 라고 밝혔음.
- 여러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자살생각, 자살시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음.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취약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가운데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사로부터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8.8%이며, 직접적 언어 폭력이나 부당한 대응을 당한 경우도 24.1%임. 이 중 10명 중 8명은 그저 참았는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76.7%)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69.8%) 때문이었음.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트랜스젠더 가운데 71.4%는 학업중단이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답함
- 또한 서울, 충남에서는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는 등 2012년 이후 각 지자체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 근거

- 2023. 11. 3.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
14. (e)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 및 다양한 성 정체성에 관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정책대안

1.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개정하여 다양한 섹슈얼리티와 성소수자 인

권 내용 포함

- 전문가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1) 어떤 내용으로 수립할 것인지 2)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함.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섹슈얼리티, 성소수자 인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성애중심주의, 성별이분법적 분리주의적 관점만을 전제하는 내용 성교육 전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해 성소수자 시민단체들과 논의를 필요로 함.

2. 학교 교직원 양성 교육 중 성소수자 인권교육 실시

- 학교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성소수자 인권교육이 즉각적으로 시도되어야 함. 교육안, 교육교재의 준비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추후에 준비가 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교육 내용, 강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교육 관련 법제도 및 정책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명시

- 성소수자가 성/소수자/인권 교육 등의 정책대상임을 명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임. 오랜 기간 성소수자 차별받고 정책에서 배제됐던 역사를 인지하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선언할 필요가 있음. 이는 차별적 교육을 반대한다는 민주주의적 선언이기도 함.

4. 섹슈얼리티,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정보와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성소수자로 정체화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성교육이어야 함.
- 성 인권 의식을 가진 연구용역을 뒤야함.
-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과 과정을 마련하여 성교육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함.

5.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 및 폭력에 대한 구제절차 및 적극적 예방조치 마련

- 여러 인권구제 절차 대상에 성소수자를 명시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에 관해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적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교 교사, 보건교사, Wee클래스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을 개발, 시행할 것

6. 성별고정관념, 이분법적 성별 분리를 전제하는 교육 정책, 지침, 환경 시정

- 남녀성별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교육 정책으로 성소수자 학생들이 곤혹함을 심하게 겪고 있음. 이분법적 성별분리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마땅함. 불필요하고 과도한 이분법적 성별분리 교육 지침들을 없앨 필요가 있음.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교실, 교무실, 체육관 등 교육환경 모든 곳에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가진 학생들이 있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정책, 지침, 환경들을 개선해야 함.

대학의 성소수자 차별적 교육이념 및 정책 규제

소관부처: 교육부

○ 현황

- 2018년 한동대학교에서 개인의 성적지향 및 삶의 양식(동성애, 폴리아모리)을 두고 학생을 무기정학한 사건이 일어났음.
- 일부 대학들에서 ‘동성애 학생 입학 금지’ (다수 개신교 대학), ‘동성애 동아리 형사처벌 고소’ (총신대), ‘대학 내 성소수자 행사 공간 대관 불허’ (숭실대),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학생들 징계(장신대)’ 등 성소수자 차별적 교육정책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두고 있음.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차별적 교육정책에 해당함.
- 이에 대해서 교육부 등 관련부처는 명시적으로 이에 대해 반대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정책대안

- 대학의 인권차별적 교육이념 및 정책을 규제하는 정부지침이 필요함.
- 인권차별적 대학에 지원금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